

2018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프로젝트 다모디라 신청서

1. 동아리 및 모임 소개 및 신청서

동아리 및 모임 명		신청자 명	
연락처		e-mail	
연혁	• • •		
활동 내용	• • • •		
주요 활동 공간	•		
앞으로의 활동 계획	• • •		
위의 내용으로 '2018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프로젝트 다모디라'에 지원하고자 합니다. 2018 . 04 . 00 대구광역시청년센터장 귀하 붙임) 1.진행계획서 2. 구성원명단 3.예산			

2. 동아리 및 모임 진행 계획서

자원 동기	• • •		
모임 계획 (5~8월 기간동안 최대 3회 까지 지원합니다.)	• 일시 : • 공간 : 대구광역시 청년센터(사용필수) ☐상상홀 ☐혁신홀 ☐유스카페 • 참가인원 : • 모임내용 : • 목표(모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) :		
	• 일시 : • 공간 : 대구광역시 청년센터(사용필수) ☐상상홀 ☐혁신홀 ☐유스카페 • 참가인원 : • 모임내용 : • 목표(모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) :		
	• 일시 : • 공간 : 대구광역시 청년센터(사용필수) ☐상상홀 ☐혁신홀 ☐유스카페 • 참가인원 : • 모임내용 : • 목표(모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) :		
공간 안내 (청년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모임을 계획해 주세요.)	상상홀(100명) 	혁신홀(30명) 	유스카페(20명) 
기타 특이사항 및 문의 사항	• •		

3. 구성원 명단

- * 담당자를 제일 위 칸인 1번 란에 입력해 주세요.
- * 필요할 경우 칸을 더 만들고, 페이지를 늘려도 됩니다.

번호	이름	생년월일	연락처	소속/직함 (학교명, 직장명, 취업준비생 등)	개인정보 활용동의
1	가나다	180402	000-0000-0000	모모대학교/학생	가나다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
[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내용]

대구광역시 청년센터(이하 ‘청년센터’)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」에 따라, 청년센터의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.

○개인정보 수집 항목

이름, 나이, 생년월일, 이메일, 연락처, 소속, 관심사

○수집목적

청년센터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
청년센터 활동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에 이용
대구광역시 청년정책 및 각종 청년행사에 관한 정보제공에 이용

※ 수집한 개인정보는 위에서 언급한 수집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제공된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「개인정보보호법」 15조 2항에 따라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,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센터의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가 불가합니다.

4. 예산(안)

(단위:원)

항목	산출내역(원)		예산액(원)
		=	
		=	
		=	
		=	
		=	
총계			500,000

- *500,000원 한도 내에서 최대 3회 까지 모임 개최가 가능합니다.
- *예산은 모임개최에 필요한 비용인 '강사비/ 다과비/ 홍보비/ 재료비' 항목에서만 사용가능 합니다.
- *최종 예산은 다모디라 선정 후 센터와 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.

<작성 예시>

항목	산출내역(원)		예산액(원)
강사비	200,000원(2급*2시간)×1회	=	200,000
다과비	5,000원×10명×2회	=	100,000
재료비	5,000원×10명×2회	=	100,000
총계			500,000

- *강사비 : 첨부 의 '다모디라 강사수당 지급기준'을 참고해 주시고, 1회 개최 최대한도 2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*다과비 : 인당 5,000원 까지
- *홍보비 : 1회 개최 최대 100,000원(현수막, 배너, 팸플렛 등의 행사개최 홍보물)
- *재료비 : 인당 10,000원 까지(소모품비)

[첨부] 다모디라 강사수당 지급기준

(단위 : 1시간당 기본 / 초과, 만원)

구 분		대 상	지 급 액
일 반 강 사	1급	• 전직 3급 이상 공무원 •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4·5급 공무원 • 전직 지방의회의원 •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•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•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, 중역 • 판·검사 및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 •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(박사학위 소지자) • 컨설턴트(대표 또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)	18/7
	2급	• 전직 4·5급 공무원 •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•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 • 중소기업체 임원급 • 일반 컨설턴트 •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• 원어민 어학 강사	15/5
	3급	• 중소기업체 과장급 •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	10/5
	4급	•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• 외국어, 전산 등 강사	8/5

- 주) 1.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
2. 세미나, 심포지엄,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
3.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, 기타 특강, 일반강좌,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